

의안번호	제284호
의결연월일	2020.12. 2.

-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11. 18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 : 2020. 11. 18. 행정복지위원회
- 상 정 일 자 : 2020. 12. 2.
제266회 예산군의회(정례회)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총무과장 : 최 명 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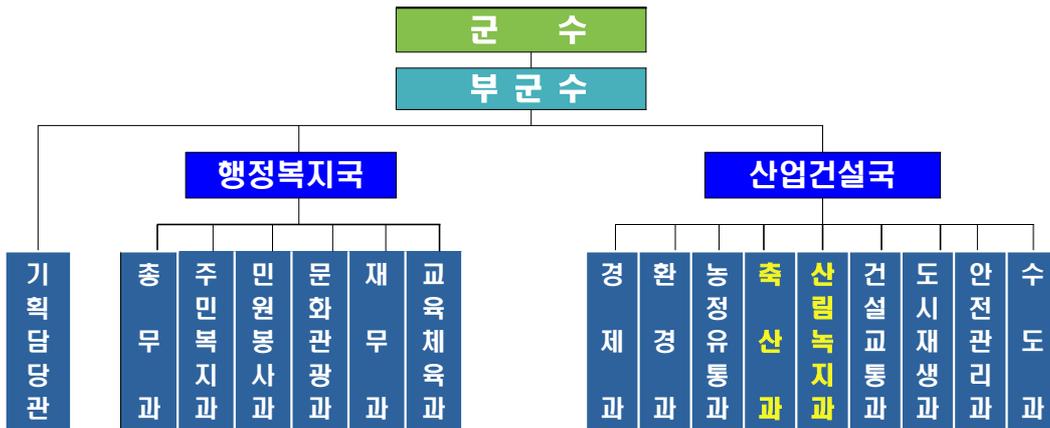
가. 제안이유

- 주요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민생 현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도모
- 예산읍은 인구, 사업체 등의 밀집으로 타 읍면 대비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이 달라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읍장 직급 상향 조정

나. 주요내용

○ 과(課) 신설 및 명칭 변경, 업무이관(안 제6조, 제18조)

- 산림축산과 ➡ 축산과, 산림녹지과
- 관광시설사업소 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운영 ➡ 산림녹지과



○ 상위법령 변경사항 반영(안 제7조, 제9조)

○ 별표 수정(안 제10조, 제13조, 제16조, 제19조)

- 직속기관, 사업소의 명칭·위치 등을 통합하여 수정

○ 직급 조정(안 제31조)

- 예산읍장 직급을 현행 5급 ➡ 4급~5급으로 상향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 용 수)

-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업무가 과중한 부서를 분과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용을 기하고, 예산읍은 예산군의 군청소재지로써 인구, 사업체 등의 밀집으로 타 읍면 대비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이 커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읍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,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